

답 변 서

- 사건번호 : 2022-335
- 사 건 명 :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 청구
- 청 구 인 : 박두혁
- 피청구인 : 군산시장
- 심판청구서 접수일 : 2022. 11. 8. (처분일 : 2022. 11. 3.)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정보 부분공개
- 고지의 유무 및 내용 : 정보 부분공개 근거 사유 알림

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 변 취 지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답 변 이 유

1. 정보공개결정 처분 경위

가. 정보공개 신청의 원인

1) 청구인 박두혁은 2022. 10. 12.일 2022년도 군산대학교에 위탁한 문화도시센터 지원금 7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제안서, 민간위탁보조금의 출처, 선정공모과정 및 협약서, '22.10.10일까지의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며 (을 제1호증)

2) 2022. 11..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조금의 출처, 선정 공모 과정 및 협약서는 공개결정 하였고, 사업계획서와 제안서, 정산서는 사업의 특성상 전국 지자체와의 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공모사업으로서 외부에 공개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계획서와 제안서는 비공개, 정산서는 2022년도 정산 완료 후 공개 예정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을 제2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문화공유도시 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과에서 임의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예산 7억원에 대하여 신속히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나. 군산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조성계획 수립 전 시민여론조사, 문화추적단, 원탁, 포럼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성과 및 결과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 경쟁을 통하여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서 올해 우리시를 포함한 16개 예비문화도시 지자체중 6개 지자체를 법정문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으로 현재 국가기관에서 평가중인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정한 평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라. 군산문화도시센터 위탁과정의 사업계획서는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센터의 추진방향, 전략 등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이 되며 동 자료의 공개로 실익보다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합니다.

마. 이에 판례에서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판단에 있어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지방자치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는 공모사업의 평가가 진행중에 있고, 문화도시센터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정에 관한 내용을 정보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군산문화도시센터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부분공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1. 을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9947426)
2. 을 제2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접수번호 9947426)
3. 을 제3호증 제4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계획 공고문

2022. 11. .

군 산 시 장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귀하